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의안 번호	4220
----------	------

2025. 1. 16.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 8. 박문섭 의원
- 나. 회부 일자: 2025. 1. 8. 회부
- 다. 상정 일자: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2024. 12. 03.) 상정,
“원안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이유

- 상위법에 의거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보장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조례의 조문 및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금연구역 조정(안 제6조제1항)
-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신설(안 제10조의2)
- 조문 수정(안 제8조제3항)
 - (현행) 흡연구역임
 - (개정) 제2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흡연구역임
-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수정(안 제14조)
- 일부 조항 자구 수정(띄어쓰기, 문구 등)

3. 검토 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금연 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보장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6조 개정

- ▷ 금연구역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생활권공원"을 "도시공원"으로 변경.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 ▷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의 금연구역 범위를 "10m 이내"로 확대.
- ▷ "흡연"을 "간접흡연"으로 용어 수정 및 표현 명확화.

- 안 제8조 개정

- ▷ 흡연구역 설치 시 명확성을 위해 문구를 수정.

- 안 제10조의2 신설

- ▷ 금연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자원봉사자 활용 근거 마련.
- ▷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

-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개정

- ▷ 서식 명칭 통일 및 조문 번호 정리.

- 안 제14조 개정

- ▷ 활동 수당 기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조정하고 지급 의무화.
- ▷ 추가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

- 별표 및 별지 문구 수정

○ 상위법령 및 조례안의 내용과 조문 체계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원안의결(박문섭 의원 회피, 출석위원 5명)

6.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없음.

붙임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생활권공원”을 “도시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를 “버스 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흡연”을 “간접흡연”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 구역

제8조제3항 중 “흡연구역임”을 “제2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흡연구역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

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를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로,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 해야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를 “산정한 금액의 50% 범위까지 활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와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방법 등(제8조 관련)

1.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방법

- 가. 「광양시 금연 환 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한다.
- 나. 표지에는 금연구역의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경계범위 등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 다.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방법

- 가.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 나. 표지에는 흡연이 가능한 구역임을 알리는 그림 또는 문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 다. 금연구역에 개방된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구역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라. 금연구역에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방법의 공통사항

- 가.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의 크기,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 해야 한다.
- 나. 표지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표지판 예시】

1. 금연구역 표지판

가. 도시공원 금연 표지판



- 1) 규격: 50cm×180cm×50T(우드스탠드형)
※ 두께: 표지판 50mm, 지중(300mm)매립형
- 2) 재질: 메타세콰이어 자연속성목, 오일스테인도장 (샌드브레스팅공법) 친환경 코팅제(에어코팅)
- 3) 전용서체: 본문-광양감동체, 광양햇살체
영문-Myriad Pro
- 4) 이미지, 문자: 샌드브레스트 (음-양각 조각)형
※ 장소·내용 등에 따라 규격·재질·문구 등 변경 가능

나. 절대보호구역 금연 표지판



- 1) 규격: 80cm×13cm
 - 2) 원단색상: Yellow
 - 3) 재질: 노면특수표시제 스카치레인 6251 미세유리함유 UV코팅, 연질알미늄, 차선용 도료사용
 - 4) 전용서체: 본문-광양감동체, 광양햇살체
영문-Myriad Pro
 - 5) 색 상

	C:70 M:0 Y:0 K:0
	C:0 M:100 Y:100 K:0
	C:0 M:0 Y:0 K:100
	C:0 M:0 Y:0 K:0
	C:0 M:0 Y:100 K:0
- ※ 장소·내용 등에 따라 규격·재질·문구 등 변경 가능

다.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금연 표지판



- 1) 규격: 80cm×13cm
 - 2) 원단색상: Yellow
 - 3) 재질: 노면특수표시제 스키치레인 6251
미세유리함유 UV코팅, 연질알미늄,
차선용 도료사용
 - 4) 전용서체: 본문-광양감동체, 광양햇살체
영문-Myriad Pro
 - 5) 색 상

	C:70 M:0 Y:0 K:0
	C:0 M:100 Y:100 K:0
	C:0 M:0 Y:0 K:100
	C:0 M:0 Y:0 K:0
	C:0 M:0 Y:100 K:0
- ※ 장소·내용 등에 따라 규격·재질·문구 등 변경 가능

2.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



- 1) 규격: 40cm×60cm
 - 2) 재질: 메타세 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샌드브레스팅공법)
친환경 코팅제(에어코팅)
 - 3) 전용서체: 본문-광양감동체, 광양햇살체
영문-Myriad Pro
 - 4) 색 상: 바탕색-공원색(DIC644)
씨 및 흡연로고-흰색
 - 5) 이미지, 문자: 샌드브레스트 (음-양각 조각)형
- ※ 장소·내용 등에 따라 규격·재질·문구 등 변경 가능

제 20 - 호

위 축 장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축 기 간: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축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여권용 사진
3.5cm×4.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광 양 시 장

60mm×90mm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61-797-4014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m² or 플라스틱

[별지 제4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생략)</p> <p>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u>생활권공원</u></p> <p>2. 「<u>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u>」 제8조제1호에 따른 <u>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u></p> <p>3.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u>」 제2조에 따른 <u>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u></p> <p>4. 그 밖에 <u>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u></p> <p>② ~ ④ (생략)</p> <p>제8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② (생략)</p> <p>③ <u>흡연구역입을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하고, 실외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구역의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u></p>	<p>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 <u>도시공원</u></p> <p>2. 「<u>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u>」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절대보호구역</u></p> <p>3. ----- ----- <u>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u></p> <p>4. ----- <u>간접흡연</u>----- -----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2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흡연구역입</u>----- ----- -----.</p>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와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⑤·⑥ (생략)

<신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 ③ (생략)

④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

④ -----

----- 별표와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⑤ 제4항-----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 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한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 지급해야한다. ----- 산정한 금액의 50% 범위까지 활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광양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흡연행위의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의무 등) ① 모든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 안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생활권공원~~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버스 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4. 그 밖에 ~~흡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광양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당해 구역 내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흡연구역임~~ 제2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하고, 실외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구역의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와 방법 등은 ~~별표 1~~과 **별표**와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

제9조(금연 자율참여업소의 지정) 시장은 금연구역의 자율적 확산을 위해 제6조제1항의 금연구역 이외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 자율참여업소로 지정하여 표지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금연 활동 지원) ① 시장은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과 활동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홍보용품을 금연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의2(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3항~~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해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②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4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 ~~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 해야한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한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산정한 금액의 50% 범위까지 활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제15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방법 등(제8조 관련)

1.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방법

- 가.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한다.
- 나. 표지에는 금연구역의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경계범위 등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 다.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방법

- 가.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 나. 표지에는 흡연이 가능한 구역임을 알리는 그림 또는 문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 다. 금연구역에 개방된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구역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라. 금연구역에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방법의 공통사항

- 가.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의 크기,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 해야 한다.
- 나. 표지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표지판 예시】

1. 금연구역 표지판

가. 생활공원 도시공원 금연 표지판

- 1) 규격: 50cm×180cm×50T(우드스탠드형)
※ 두께: 표지판 50mm,
지중(300mm)매립형
- 2) 재질: 메타세콰이어 자연속성목,
오일스테인도장 (샌드브레스팅공법)
친환경 코팅제(에어코팅)
- 3) 전용서체: 본문-광양감동체, 광양햇살체
영문-Myriad Pro
- 4) 이미지, 문자: 샌드브레스트 (음-양각 조각)형
※ 장소·내용 등에 따라 규격·재질·문구 등 변경 가능

나. 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금연구역 절대보호구역 금연 표지판

- 1) 규격: 80cm×13cm
- 2) 원단색상: Yellow
- 3) 재질: 노면특수표시제 스킨치레인 6251
미세유리함유 UV코팅, 연질알미늄,
차선용 도료사용
- 4) 전용서체: 본문-광양감동체, 광양햇살체
영문-Myriad Pro
- 5) 색 상

	C:70 M:0 Y:0 K:0
	C:0 M:100 Y:100 K:0
	C:0 M:0 Y:0 K:100
	C:0 M:0 Y:0 K:0
	C:0 M:0 Y:100 K:0

※ 장소·내용 등에 따라 규격·재질·문구 등 변경 가능

다.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금연 표지판



- 1) 규격: 80cm×13cm
 - 2) 원단색상: Yellow
 - 3) 재질: 노면특수표시제 스키치레인 6251
미세유리함유 UV코팅, 연질알미늄,
차선용 도료사용
 - 4) 전용서체: 본문-광양감동체, 광양햇살체
영문-Myriad Pro
 - 5) 색 상

	C:70 M:0 Y:0 K:0
	C:0 M:100 Y:100 K:0
	C:0 M:0 Y:0 K:100
	C:0 M:0 Y:0 K:0
	C:0 M:0 Y:100 K:0
- ※ 장소·내용 등에 따라 규격·재질·문구 등 변경 가능

2.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



- 1) 규격: 40cm×60cm
 - 2) 재질: 메타세 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샌드브레스팅공법)
친환경 코팅제(에어코팅)
 - 3) 전용서체: 본문-광양감동체, 광양햇살체
영문-Myriad Pro
 - 4) 색 상: 바탕색-공원색(DIC644)
씨 및 흡연로고-흰색
 - 5) 이미지, 문자: 샌드브레스트 (음-양각 조각)형
- ※ 장소·내용 등에 따라 규격·재질·문구 등 변경 가능

제 20 - 호

위 촉 장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직인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여권용 사진 3.5cm×4.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광 양 시 장

60mm×90mm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61-797-4014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m² or 플라스틱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직인